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17호 2014. 3.31.(월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----- 1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3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- 5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59호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----- 2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69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0호선)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----- 2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380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51호 및 소1-6호선)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----- 28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2]



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4년 3월 31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5호

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2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
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



제3조(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)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)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3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3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-23외 1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램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3. 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03-28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경서동 851-10	청라커널로319번길 3-23	2011.06.30	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,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976-71	푸른로7번길 14	2013.07.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경서동 965-10	청라루비로42번길 5-21	2011.02.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 서구 경서동 976-65	푸른로13번길 1	2013.07.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연희동 781-10	담지로86번길 5-35	2011.02.14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	
6	인천 서구 경서동 966-8	청라루비로42번길 15	2011.02.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원창동 390-45	북항로 76-6	2009.08.28	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	
8	인천 서구 경서동 763-1	경서로18번길 7-12	2009.08.28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2-5블럭	마중4로 10	2012.10.19	마중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 서구 금곡동 130-1	완정로188번2길 54	2008.11.21	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 서구 오류동 434-29, 434-194	원당대로 227-6	2008.11.2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지명에서 유래	
12	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9-1블럭	이든1로 43	2012.10.19	이든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 서구 당하동850-1	드림로 405	2009.07.12	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	
14	인천 서구 오류동 395-84	원당대로117번길 37-2	2008.11.2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 서구 오류동 395-62	원당대로117번길 37-3	2008.11.2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6	인천 서구 불로동 618	서곶로 908-1	2009.08.28	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	
17	인천 서구 원당동 308-1	원당대로 983-3	2008.11.2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지명에서 유래	
18	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1블럭8-1로트	검단로623번안길 9	2008.11.21	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	
19	인천 서구 당하동 365-1	드림로 705-1	2009.07.12	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38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03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건지로 371외 4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램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4-03-28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가좌동 88-4	건지로 371	2014.03.18	건축물 멸실	
2	인천 서구 오류동 434-194	원당대로 227-8	2014.03.28	기존건물철거	
3	인천 서구 오류동 434-29	원당대로 227-2	2014.03.28	기존건물철거	
4	인천 서구 오류동 434-29	원당대로 227-4	2014.03.28	기존건물철거	
5	인천 서구 오류동 434-29	원당대로 227-6	2014.03.28	기존건물철거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39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『주택법』 제16조(사업계획의 승인)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28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공동주택-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(주)정석종합건설 대표 정원석 외 2인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1-5번지
 - 나. 대지면적 : 692.5㎡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1,350.6㎡(지상5층)
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-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 40세대)
 - 마. 사 업 비 : 2,602,000천원
4. 사업기간 : 2014. 04.01. ~ 2014. 12.01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347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. 3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**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- 복지수요 급증 등 지역 현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조례안 제2조)
 - 877명 ⇒ 885명 (증 8명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조례안 별표 3)
 - 일반직 : 873명 ⇒ 881명(증 8명)
 - 6급이하 : 812명 ⇒ 820명(증 8명)
-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(규칙안 별표)
 - 본 청 : 567명 ⇒ 570명(증 3명)
 - 동 : 187명 ⇒ 192명(증 5명)

※ 추가소요 인건비 : 300,349천원 (내역 별첨)

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877”를 “885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859”를 “867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 기 구	직속기관	출장소	동
총 계	885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881	-				
3급	1	1				
4급	5	3	1	1		
5급	55	26	2	6	1	20
6급 이하 계	820	-				
별정직 계	3	-				
5급 상당	-	-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-				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87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 : 859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8명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 기구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출장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87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87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55</td> <td>26</td> <td>2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81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이하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소	동	총 계	877			-			정무직 계	1			-			구청장	1	1					일반직 계	873			-			3급	1	1					4급	5	3	1	1			5급	55	26	2	6	1	20	6급 이하 계	812			-			별정직 계	3			-			5급 상당	0						6급 상당이하계	3			-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885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: 867--- 2. -----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 기구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출장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88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88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55</td> <td>26</td> <td>2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82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이하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소	동	총 계	885			-			정무직 계	1			-			구청장	1	1					일반직 계	881			-			3급	1	1					4급	5	3	1	1			5급	55	26	2	6	1	20	6급 이하 계	820			-			별정직 계	3			-			5급 상당	0						6급 상당이하계	3			-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877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87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3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55	26	2	6	1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812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이하계	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885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88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3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55	26	2	6	1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820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이하계	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비용소요 추계서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					비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300,349,690							
1. 인건비	274,071,990							
가. 기본급	211,215,600	○ 구청장(연봉제)	85,965,000					
		○ 부구청장(연봉제)	82,464,000					
		○ 4급(연봉제)	75,439,000					
		○ 5급(26호봉)	3,860,000					
		○ 6급(22호봉)	3,193,300	1		12	38,319,600	
		○ 7급(13호봉)	2,424,400	3		12	87,278,400	
		○ 8급(7호봉)	1,783,700	4		12	85,617,600	
		○ 9급(4호봉)						
나. 상여금	15,841,170	○ 정근수당	211,215,600	8	0.08	2	15,841,170	90%평균
다. 정액수당	47,015,160							
1)가족수당	5,836,800	○ 배우자	40,000	8	0.78	12	2,995,200	
		○ 존비속	20,000	8	1.48	12	2,841,600	
2)자녀학비수당	1,696,800	○ 고등학교	424,200	1		4	1,696,800	
3)정근수당기산금	5,88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			3,12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		12	1,32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			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3		12	2,16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4		12	2,400,000	
4) 정액급식비	12,480,000	○ 일반직	130,000	8		12	12,480,000	
5) 명절휴가비	21,121,560	○ 명절휴가	211,215,600	8	0.05	2	21,121,560	
2. 물건비	12,540,000							



가. 직책업무추진비	600,000	○ 4급	350,000					
		○ 5급	100,000					
		○ 6급	50,000	1		12	600,000	
나. 직급보조비	11,940,000	○ 4급	400,000					
		○ 5급	250,000					
		○ 6급	155,000	1		12	1,860,000	
		○ 7급	140,000	3		12	5,040,000	
		○ 8급	105,000	4		12	5,040,000	
		○ 9급	105,000					
3. 이전경비	13,737,76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13,737,760	○ 5급	3,133,000		0.80			
		○ 6급	2,693,460	1	0.80	1	2,154,760	
		○ 7급	2,289,850	3	0.80	1	5,495,640	
		○ 8급	1,902,300	4	0.80	1	6,087,360	
		○ 9급	1,617,510		0.80			

주1)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휴가비,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

2)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

3)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 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

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

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 계	본 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보 건 지 소	출장소	동
총 계		885	570	18	45	16	44	192
정무직 계		1	1	0	0	0	0	0
구청장		1	1					
일반직 계		881	566	18	45	16	44	192
3급 소계		1	1					
지방부이사관		1	1					
4급 소계		5	3	1	1	0	0	0
지방서기관		2	1	1				
지방기술서기관		2	1		1			
지방서기관·기술서기관		1	1					
5급 소계		55	26	2	5	1	1	20
지방행정사무관		30	14	2				14
지방의무사무관		4			3	1		
지방시설사무관		2	2					
지방행정·사회복지사무관		5	3					2
지방행정·보건사무관		2	1					1
지방행정·환경사무관		1	1					
지방행정·시설사무관		2	2					
지방행정·공업·농업사무관		2	1					1
지방행정·환경·방송통신사무관		1						1
지방행정·시설·녹지사무관		2	2					
지방행정·공업·농업·녹지사무관		1						1
지방행정·농업·공업·시설사무관		1					1	
지방보건·간호·의료기술·약무사무관		1			1			
지방행정·보건·간호·의료기술사무관		1			1			
6급 소계		196	152	3	9	3	8	21
지방행정주사		93	71	3			1	18
지방세무주사		6	6					
지방전산주사		1	1					
지방사회복지주사		6	6					
지방공업주사		5	5					
지방농업주사		1	1					
지방녹지주사		3	3					



지방보건주사	2	2					
지방의료기술주사	1			1			
지방간호주사	3			3			
지방환경주사	6	6					
지방시설주사	18	16				2	
지방방송통신주사	1	1					
지방행정·세무주사	4	3				1	
지방행정·사회복지주사	4	3					1
지방행정·공업주사	2	2					
지방행정·농업주사	2					1	1
지방행정·보건주사	3	2				1	
지방행정·환경주사	2	2					
지방행정·시설주사	8	8					
지방행정·녹지주사	1	1					
지방녹지·시설주사	1	1					
지방행정·방송통신주사	1	1					
지방행정·사회복지·보건주사	1	1					
지방행정·공업·시설주사	1					1	
지방행정·농업·세무주사	1					1	
지방행정·보건·간호주사	1			1			
지방행정·보건·환경주사	2	2					
지방보건·간호·의료기술주사	4			3	1		
지방간호·의료기술주사	1				1		
지방행정·보건·간호·의료기술주사	1				1		
지방보건·간호·의료기술·약무주사	1			1			
지방농림운영주사	1	1					
지방전기운영주사	1	1					
지방기계운영주사	1	1					
지방운전주사	4	3					1
지방사무운영주사	2	2					
7급 소계	297	193	7	15	6	21	55
지방행정주사보	101	60	3			1	37
지방세무주사보	29	23				6	
지방전산주사보	3	3					
지방사회복지주사보	24	19					5
지방공업주사보	9	8				1	
지방농업주사보	1	1					
지방녹지주사보	5	5					
지방수의주사보	1	1					



지방보건주사보	15	9		4	1	1	
지방의료기술주사보	4			3	1		
지방간호주사보	6			5	1		
지방환경주사보	10	10					
지방시설주사보	37	32				5	
지방방송통신주사보	3	3					
지방행정·사회복지주사보	6	6					
지방행정·농업주사보	4					3	1
지방보건·간호주사보	1			1			
지방수의·농업주사보	1	1					
지방의료기술·식품위생주사보	2			1	1		
지방보건·간호·의료기술주사보	2				2		
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	1	1					
지방전기운영주사보	1	0				1	
지방기계운영주사보	2	2					
지방운전주사보	18	4	1	1		1	11
지방사무운영주사보	9	5	1			2	1
지방속기주사보	2		2				
8급 소계	260	160	4	14	5	13	64
지방행정서기	111	72	2	1			36
지방세무서기	12	9				3	
지방전산서기	5	5					
지방사회복지서기	28	10					18
지방공업서기	5	5					
지방농업서기	1	1					
지방녹지서기	3	3					
지방해양수산서기	1	1					
지방보건서기	11	7		2		2	
지방의료기술서기	2			1	1		
지방간호서기	7			4	3		
지방환경서기	10	10					
지방시설서기	32	26				6	
지방방송통신서기	2	2					
지방행정·전산서기	1	1					
지방행정·사회복지서기	3	2					1
지방행정·농업서기	1						1
지방보건·공업서기	1	1					
지방보건·간호서기	1			1			
지방의료기술·식품위생서기	1				1		



지방환경·공업서기	1					1	
지방보건·의료기술·식품위생서기	3			3			
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	1	1					
지방기계운영서기	1	1					
지방운전서기	13	2	1	1		1	8
지방사무운영서기	3	1	1	1		0	
9급 소계	67	31	1	1	1	1	32
지방행정서기보	33	11	1				21
지방세무서기보	3	2				1	
지방사회복지서기보	18	6		1			11
지방공업서기보	0	0					
지방녹지서기보	1	1					
지방보건서기보	1				1		
지방환경서기보	2	2					
지방시설서기보	5	5					
지방행정·환경서기보	1	1					
지방운전서기보	0	0					0
지방사무운영서기보	3	3				0	
별정직 계	3	3	0	0	0	0	0
5급상당 소계	0	0	0			0	0
일반비서	0	0					
6급상당 소계	1	1					
일반비서	1	1					
7급상당 소계	1	1	0			0	0
일반비서	1	1					
9급상당 소계	1	1					
일반비서	1	1					

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
[별표]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	[별표]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보건 소	보건 지소	출장 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보건 소	보건 지소	출장 소	동
총 계	<u>877</u>	<u>567</u>	18	45	16	44	<u>187</u>	총 계	<u>885</u>	<u>570</u>	18	45	16	44	<u>192</u>
일반직 계	<u>873</u>	<u>563</u>	18	45	16	44	<u>187</u>	일반직 계	<u>881</u>	<u>566</u>	18	45	16	44	<u>192</u>
5급 소계	55	26	2	5	1	1	20	5급 소계	55	26	2	5	1	1	20
행정	<u>32</u>	<u>15</u>	2				<u>15</u>	행정	<u>30</u>	<u>14</u>	2				<u>14</u>
행정·사회복지	<u>3</u>	<u>2</u>					<u>1</u>	행정·사회복지	<u>5</u>	<u>3</u>					<u>2</u>
6급 소계	<u>195</u>	<u>151</u>	3	9	3	8	21	6급 소계	<u>196</u>	<u>152</u>	3	9	3	8	21
환경	<u>5</u>	<u>5</u>						환경	<u>6</u>	<u>6</u>					
7급 소계	<u>294</u>	<u>191</u>	7	15	6	21	<u>54</u>	7급 소계	<u>297</u>	<u>193</u>	7	15	6	21	<u>55</u>
사회복지	<u>23</u>	19					<u>4</u>	사회복지	<u>24</u>	19					<u>5</u>
환경	<u>9</u>	<u>9</u>						환경	<u>10</u>	<u>10</u>					
시설	<u>36</u>	<u>31</u>				5		시설	<u>37</u>	<u>32</u>				5	
8급 소계	<u>256</u>	160	4	14	5	13	<u>60</u>	8급 소계	<u>260</u>	160	4	14	5	13	<u>64</u>
행정	<u>108</u>	<u>69</u>	2	1			36	행정	<u>111</u>	<u>72</u>	2	1			36
사회복지	28	<u>14</u>					<u>14</u>	사회복지	28	<u>10</u>					<u>18</u>
시설	<u>31</u>	<u>25</u>				6		시설	<u>32</u>	<u>26</u>				6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359호

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63(2013.12.30.) 『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공람 공고』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64(2013.12.30.) 『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 마련에 대한 주민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』 호로 기 공고된 내용이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3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

2. 공고내용

가. 배경 및 목적

-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·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 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이에,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, 입지,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또한 지난 12



월 공고된 초안에 대한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해당 사실을 추가로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.

나.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

○ 시 지정문화재(3개소)

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	해당지역
기념물 제33호	대곡동 지석묘군	인천. 서구 대곡동 산123-1	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
기념물 제59호	반남박씨 대종중 묘역	인천. 서구 대곡동 산151-1	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
기념물 제61호	평산신씨 종중묘역	인천. 서구 대곡동 산 120-1	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

다. 상세내용 :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

라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/ 공고란
-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
- 서구청(문화관광체육과) 및 각 주민센터 민원실 도면 비치

마. 공고기간 : 2014. 3. 26. ~ 2014. 4. 10. (15일간)

바. 특기사항

- 동 허용기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4. 4. 10. 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의견서 (서면제출/성명, 연락처, 의견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 장소
 - 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(심곡동, 서구청)
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
- 문의사항 :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(담당자 : 백형두 ☎ 560-4343)



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변경에 대한 의견서

□ 의견 제출자

- 주 소 :
- 성 명(법인, 단체명) :
- 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□ 의견내용

◦ 의 건 사 항

-

상기 본인은 관내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변경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4. .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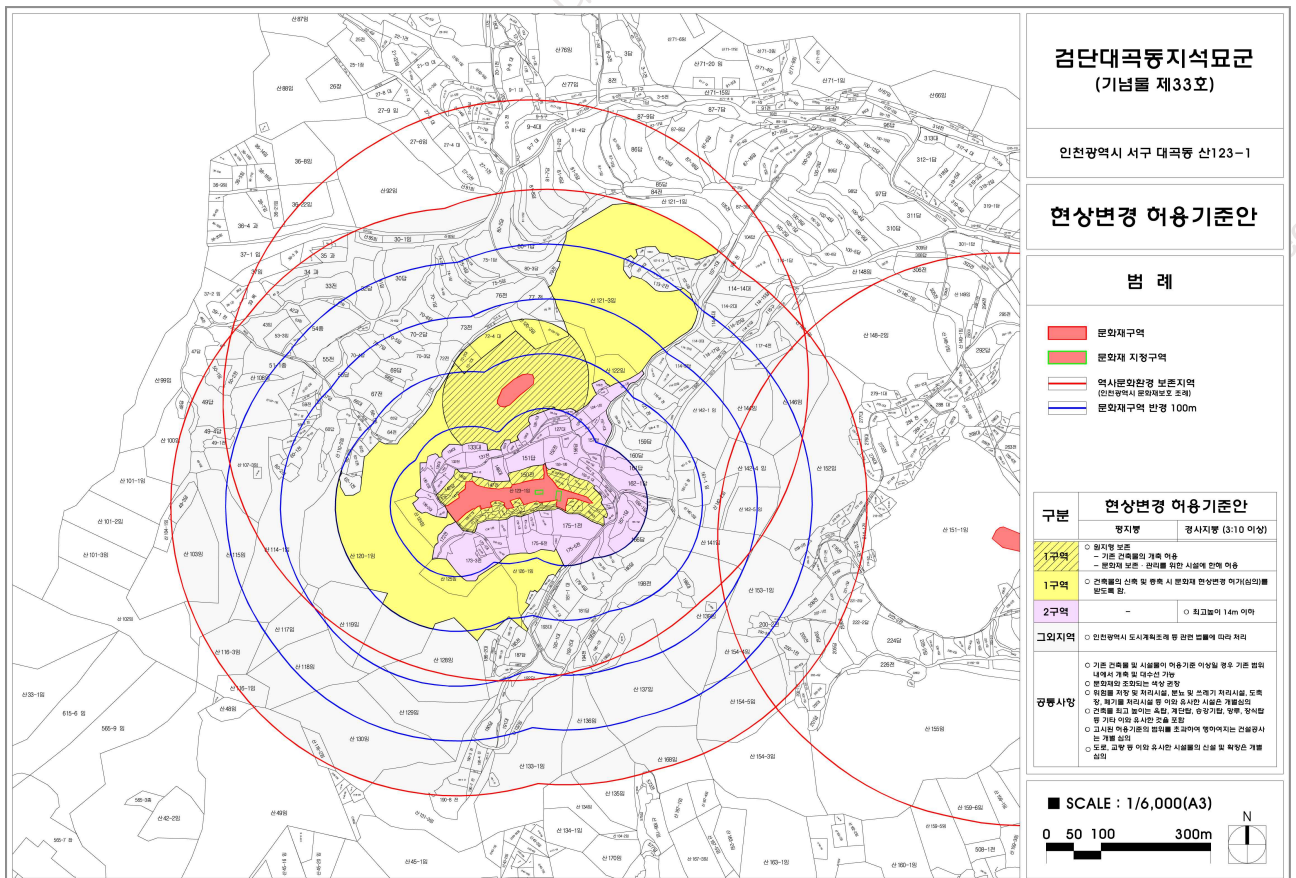
의견제출자 : (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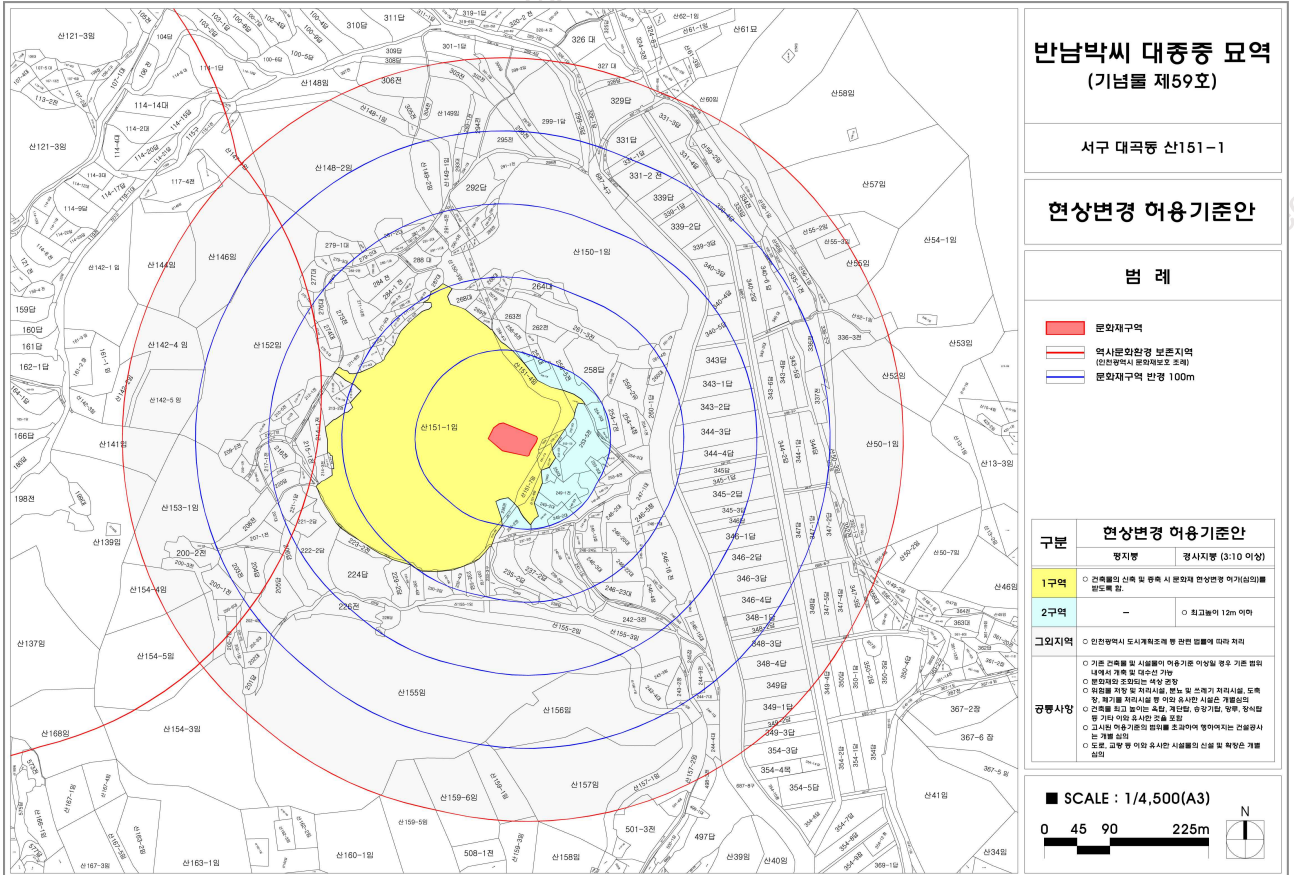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대곡동 지식묘군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안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 	
2구역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고높이 14m 이하
그외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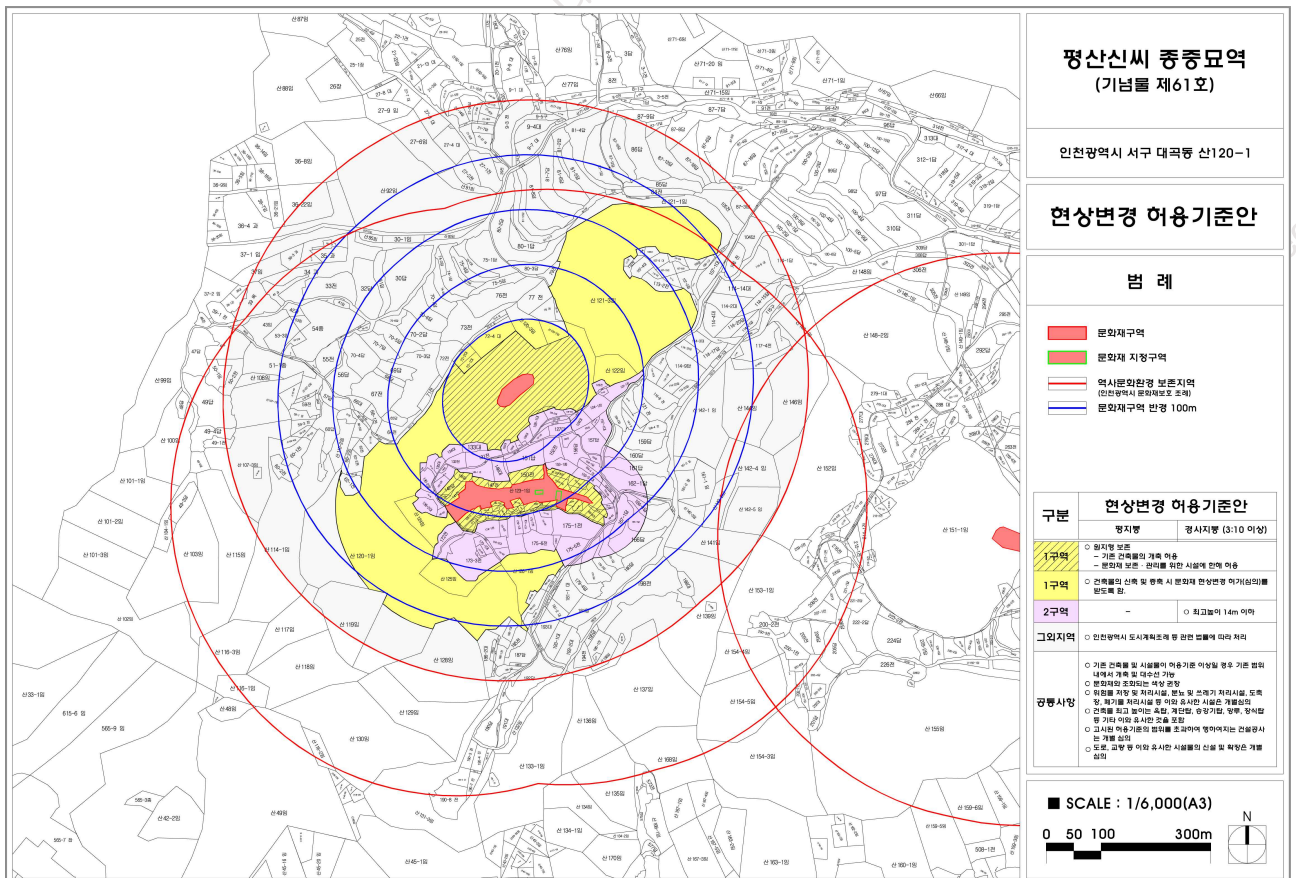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안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○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	
2구역	-	○ 최고높이 12m 이하
그외지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1호 평산신씨 종중묘역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안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지형 보존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○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	
2구역	-	○ 최고높이 14m 이하
그외지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369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0호선) 실시계획인가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소로1류30호선, 사업명 : 검암동 소1-30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3) 및 건설과(560-452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3. 31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 : 검암동 211-47번지 ~ 71-1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소로1류30호선)
 - 【명칭】 검암동 소1-30호선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의 규모 : L=647m, B=5m, A=3,147m²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6. 12. 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과 같음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붙임과 같음
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과 같음
9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51호선 및 소1-6호선) 실시계획인가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중로1류51호선 및 소로1류6호선, 사업명 : 원창동 경인실업 인근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3) 및 건축과(560-472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3. 31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-1번지 외 6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중로1류51호선 및 소로1류6호선)
 - 【명칭】 원창동 경인실업 인근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의 규모 : L=169m, B=6~10m, A=1,444m²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청천기업(주) 외 4인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10번길 20(가좌동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5. 06. 30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과 같음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붙임과 같음
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과 같음
9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